#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양부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948

발의연월일: 2025. 2. 6.

발 의 자:양부남・박해철・이광희

김영환 · 민형배 · 조계원

김현정 • 이강일 • 박균택

전진숙 • 권향엽 • 김한규
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

현행법은 화재진압, 구급·구조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해 시·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도록 하며, 그 업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은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인구 고령화로 인해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한편 기대수명증가 및 의료기술 발달로 노동 가능 연령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 농촌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52.6%에 달하여(2023년 기준) 의용소방대원 모집에 어려움이 있고, 그 외 지역에서도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65세가 지나면 더 이상활동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.

또한, 의용소방대원의 화재진압・구조구급 등 활동 및 운영에 대한

경비 지원 근거법령은 마련되어 있으나, 활동 공간 제공 등을 정한 것이 없어 의용소방대원의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# 주요내용

- 가. 인구의 고령화로 의용소방대원의 모집이 어려운 농산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조례가 정하는 5년 이내 범위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함(안 제5조 단서 신설).
- 나. 시·도지사로 하여금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,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공간 등은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를 정하고자 함(안 제14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##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·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공 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5조(정년) 의용소방대원의 정년	제5조(정년)		
은 65세로 한다. <u>&lt;단서 신설&gt;</u>	<u>다만, 시·도의</u>		
	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		
	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		
	<u>다.</u>		
제14조(경비의 부담) ① • ②	제14조(경비의 부담) ① · ②		
(생 략)	(현행과 같음)		
<u>&lt;신 설&gt;</u>	③ 시・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		
	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		
	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		
	<u>할 수 있다.</u>		